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상 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박 상 구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**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,

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으로 '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'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,

행안부 예규상의 공법선정위원회로 그 기능을 일원화 하는 한편, 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설계경제성검토(VE)를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